



국민과 함께 자연과 함께

보도자료

제공일 : 2010. 9. 13.
제공자 :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
과 장 : 류 이 현
사무관 : 안 중 략
전 화 : 500-1719
쪽 수 : 2P
별첨자료 : 있음(1P)

이 자료는 2010년 9월 14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농지연금, 내년 1월부터 시행

- 농지 담보로 인정된 노후생활 가능 -

- 농림수산식품부는 고령농업인이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사업의 가입 신청을 내년 1월부터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.
-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고, 영농경력 5년 이상이며,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면적이 3만㎡ 이하인 농업인이다.
- 농지연금은 농지는 소유하고 있지만 일정한 소득이 없는 고령 농업인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설계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.
- 농지연금에 가입하여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하여 연금 지급이 종료된 경우에는 배우자가 농지연금채무를 승계하면 계속해서 배우자 사망시까지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.
- 사망 등으로 농지연금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그동안 지급

받은 연금과 이자 등 연금채무는 상속인이 상환하거나 담보 농지의 저당권을 실행하여 회수하게 된다.

- 이 경우 농지연금채권은 담보농지에 대해서만 행사하게 되므로 담보농지를 처분하여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하고,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한 금액은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고 농지은행이 부담하게 된다.
- 농림수산식품부가 검토 중인 상품모형에 따르면 70세 농업인이 2억원 상당의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사망시까지 매달 약 76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.
- 또한, 담보로 제공한 농지는 농업인이 직접 경작할 수도 있고 임대할 수도 있어 연금이외 수입도 올릴 수 있다.
- * 70세 농업인이 2억원 상당의 논(1ha)을 담보로 가입시 연금액 76만원/월 외에 벼를 직접 경작할 경우 약 45만원/월(임대할 경우 약 19만원/월) 추가 수입 가능
- 농림수산식품부는 상품모형 설계, 운영시스템 구축 등을 올해 11월까지 완료하고, 내년 1월부터 농지연금 지원 신청을 농지은행(한국농어촌공사)에서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- 농지연금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본사·도본부·지사 어디에서나 (대표전화 1577-7770) 할 수 있다.

<참고>

농지연금 관련 주요 내용

① 농지연금의 지원기준

- 지원대상 농업인 요건
 - 부부 모두 65세이상, 영농경력 5년이상, 소유농지 총면적이 3만㎡이하
- 지원절차
 - 지원신청 → 지원대상자 결정 → 담보농지 제공 → 약정체결 → 담보농지에 저당권설정 → 농지연금 지급
- 지급방식 :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(종신행), 일정기간 매월 지급(기간형)
- 가입비와 위험부담금 징수
 - 가입후 중도이탈방지, 농지가격하락·이자율상승·수명 연장 등으로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손실 보전 목적(가입자에게서 징수)
 - 가입비는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2 이내에서 장관이 결정
 - 위험부담금은 농지연금채권의 연 100분의2 이내에서 장관이 결정
- 담보농지에 대한 저당권 설정 제한
 - 담보농지에 저당권 등 제한물권을 설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

② 농지연금의 사후관리

- 농지연금 지급정지 및 지급금 회수
 -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등 농지연금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연금지급을 정지하고, 그 담보농지를 처분하여 정산 및 지급금 회수
- 농지연금채권 행사범위
 - 채권행사는 원칙적으로 담보농지에 대해서만 가능
 - 다만, 제한적으로 다른 재산에 대하여도 채권행사 가능(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채권·임금채권 등의 사유로 회수하지 못한 금액)